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[신달호 의원 대표발의]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271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. 1. 27.

발의의원 : 신달호 의원,  
전홍배 의원, 박영동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선임전문위원의 사무를 추가하고  
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명시하고자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선임전문위원 사무 추가

- 기존 전문위원의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겸임  
내용 추가

### 나. 정책지원관 세부적인 사무 신설

-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 
수집·조사·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,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 
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-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-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-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- 의원 연구단체 지원
-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## 3. 개정 규칙안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(일부개정예 한함)

나. 관계법령: 붙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조례」  
제5조, 제7조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선임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 사무를 겸임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의원 연구단체 지원
7.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(전문위원) ①(생략)<br>②(생략)<br>〈신설〉<br><br>〈신설〉 | 제4조(전문위원) ①(현행과 같음)<br>②(현행과 같음)<br>③ 선임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<br>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<br>행정사무를 겸임한다.<br>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정책지원관은<br>7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<br>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<br>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<br>를 분장한다.<br>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<br>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<br>료 수집·조사·분석을 통한 의정<br>활동지원<br>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<br>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br>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br>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<br>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br>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<br>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<br>6. 의원 연구단체 지원<br>7.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<br>인정하는 업무 |

**【지방자치법】**

**제41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**

**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**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**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**

**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**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·도의 의회사무처,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,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시·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(定數)는 별표 5와 같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,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

나 의회사무국장·의회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④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(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: 6급 이하
2. 시·군·구의 경우: 7급 이하

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(이하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이라 한다)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### 【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】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.